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 : 붙임참조

4. 검 토 의 견 : 붙임참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5월 18일

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

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7년 5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개정이유

유사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의 통합 및 영업용 요금의 업무용 수준 인하, 학교·사회복지시설·수영장·대덕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누진단계 적용 완화 등을 통해 요금 격차완화 및 부담을 경감하여 민원을 해소하고,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고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유사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현행 5종인 상수도 업종을 4종으로 간소화하고, 영업용 요금을 14.1% 인하하며, 원가에 미달하는 가정용 요금은 9.0% 상향 조정함(안 별표2, 별표4).
- 나. 업종구분표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함(안 별표4).

3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유사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의 통합과 영업용의 업무용 수준 인하, 학교·수영장·사회복지시설·대덕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누진단계 적용을 완화하여 요금부담경감 및 격차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

주요 내용은

○ 유사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현행 5종인 상수도 업종을 4종으로 간소화하고, 영업용 요금을 업무용 수준으로 14.1%인하, 원가에 미달하는 가정용 요금을 9.0% 현실화하여 조정하고,

학교·사회복지시설·수영장·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하여 누진단계 적용을 완화하였으며,

- 업종구분표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,
- 부칙에 시행일을 2007년 7월 1일부터로 하고 대덕연구개발 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의 101㎡ 이상 사용요금에 대한 개정 규정의 효력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음.

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업종구분 혼란 및 업종차등 방지로 민원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
- 영업용 요금을 업무용 수준으로 인하, 가정용 요금을 현실화 하여 요금 격차의 완화 및 형평성 제고로 지역경제의 활성 화를 도모하고,
- 학교·사회복지시설·수영장·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하여 누진단계 적용을 완화하여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유치 촉진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 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,

조례 개정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액 4억원에 대하여는 경영개선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